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491
----------	------

제안연월일 : 2023년 12월 19일
제안자 : 도시계획균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허훈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18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광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71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상정해 각각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벽보, 현수막,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
- 그러나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의가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같은 조항 내에서도 불법 광고물, 불법 유동광고물 등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유동광고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해 조례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실태조

사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전단 등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또한 현행 조례에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대부업 및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은 불법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요청 및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기존의 제28조 조문 제목인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을 불법 유동 광고물의 관리로 변경함(안 제28조 제목)
- 나.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제1항)
- 다. 불법 유동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 라. 시장은 대부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제28조 제6항 제1호 신설)
- 마. 시장은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제28조 제6항 제2호 신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목인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를 “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유동광고물”이란 영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중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한다.

제28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불법 유동 광고물”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로,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불법 유동 광고물 합동점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시장”을 “시장·구청장”으로, “불법광고물”을 “불법 유동광고물”로, 실시할 “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구청장에 게 계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로 한다.

제2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⑥시장은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법 유동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대부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2. 시장은 「청소년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는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요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 <u><신 설></u></p> <p>① 도로변 공공시설물을 소유 또는 설치·유지·관리하는 주체는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시설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구청장은 도시경관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실명제, 불법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④ (생략) <u><신 설></u></p>	<p>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 ① “유동광고물”이란 영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중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한다.</p> <p>② ----- ----- 불법 유동광고물----- -----</p> <p>③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점검-----.</p> <p>④시장·구청장----- ----- 불법 유동광고물----- 수 있으며,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⑥ 시장은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법 유동광고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시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대부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p> <p>2. 시장은 「청소년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는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요청</p>